

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8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대관료 반환율을 상향하고, 역사자료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의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역사자료관 소재지 현행화(안 제2조)
- 나. 대관료 반환기준 정비(안 별표 3)
- 다. 용어 및 문구 정비(안 제19조, 제24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상모동 156-1번지”를 “박정희로 123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담당주사가”를 “담당 팀장이”로 한다.

제24조제4항제1호 중 “시”를 “구미시”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[별표 3]

대관료 반환기준(제24조제3항 관련)

유형		반환기준
1	-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- 대관일 7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	대관료 전부 반환
2	- 유형 1 및 조례 제23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역사자료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 - 대관일 이전 - 대관일 이후	- 대관료 110% 반환 -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관료의 110% 반환
3	- 유형 1을 제외한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 - 대관일 이전 - 대관일 이후	- 대관료 90% 반환 -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관료의 90% 반환
※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: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·화산주의보 또는 경보(지진포함)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함 ※ 취소신청서 : 별지 제4호 서식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”(이하 “역사자료관”이라 한다)이란 <u>상모동 156-1번지</u> 일원에 조성한 박물관 시설을 말한다. 2. ~ 5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<u>박정희로 123</u> ----- ----- -----.
제19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역사자료관 관리운영 <u>담당주사가</u> 된다. ② (생략)	제19조(간사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담당 팀장이</u> 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24조(대관료) ① ~ ③ (생략)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1. 국가기관, 경상북도, <u>시</u> 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. (생략)	제24조(대관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구미시</u>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
제12조(설립과 운영) ① 생략

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생략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4. 생략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 생략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~ 마. 생략

6. ~ 7. 생략

소 관 부 서		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
입 안 자	관 장	김 종 우
	팀 장	김 혜 영
	담 당 자	최 창 혁 (480-4935)